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803호)

제 안 설 명



2019. 9.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홍 성 룡**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3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송파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 의원은 작년 8월 광복 73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이루었는가?"라는 고민으로, 최근 3년 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공구매로 구입한 일본산 제품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 보았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수작업으로 집계해야 하는 어려움과 원산지 표시 모호성 등으로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최소 570억 원 이상의 일본산 제품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며 미래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전범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사과 조차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 아베정권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제여론전을 펼치는가 하면,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와 더불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확정하였습 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등 반인륜적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침탈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듯이 얼마든지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적어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정부조달협정,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 위배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안 제4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5조)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8조)는 것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안의 규정이 시장에게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조례안의 규정방식은 "교육감은 ~ 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교육감은 ~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u>권고적·임의적 규정</u>입니다.

"노력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고적·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교육감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법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제처 2014.11.3. 회신의견제시 14-0210, 법제처 2013.3.11. 회신의견제시 13-0061, 등 참조).

둘째,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정부조달협정 위배 여부를 살펴보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 범위는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기초 자치단 체는 6.3억 원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위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미만을 적용범위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될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지방계약법 위배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고 판시하고 있고,

또 다른 판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중략).....단순히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위 법령이나 그 세부 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본 전범(戰犯)기업"은 2012년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 위원회'가 조사 · 발표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동원하여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반인륜적 범법(犯法)행위를 자행한 기업을 말합니다.

위 판례에서 보듯이 공공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계약상대 자를 각 발주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일본 전범 (戰犯)기업이 특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확정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u>반인륜적 범법(犯法)행위를 자행한 일본</u>전범(戰犯)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일본 전범(戰犯)기업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한다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수 없을 것이며,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행위라고 할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위배소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u>입법·법률고문 자문의견 회신 결과</u> 자문의견을 보내온 법무법인(변호사) 세 곳 모두 <u>본 조례안이 법령과</u> 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제의 잔재, 특히 일본 전범 (戰犯)기업은 우리사회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삼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어떻게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일각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 돌비석에 새겨져 있는 "일본의 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 우린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라는 문구가 의미하듯이 우리는 진정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의원은 작년 8월부터 이조례안을 추진해 왔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자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국제조약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역사인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본 조례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독도 도발, 위안부·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거부, 초계기 사건과 최근 경제침탈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u>정한론</u> (征韓論)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착취하고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지양함 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